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1

나. 제안자 : 부천시청

다. 회부일자 : 1998. 9.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98. 9.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가. 제안이유

○ 환경부 폐관 67500-1510(97. 11. 15)호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안 제4조)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함.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안 제5조)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물기 제거 후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안 제6조)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③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④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⑤스스로 감량처리하도록 함.
-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②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고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용기에 배출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안 제7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발생·감량 및 재활용 처리내용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안 제10조)
 -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위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 등을 정하도록 함.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류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수거용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부산물은 재활용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시설,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정수(안 제11조)
 - 규격봉투 사용시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규격봉투 사용 : 봉투판매가격(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표6의 규정)
 - 전용수거용기 사용 : 감량의무사업장 kg당 50~85원, 공동주택 세대당 월 1,000원~2,000원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안 제12조)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재활용 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 1인당 약 0.25kg이고 세대당 약 0.6~0.7kg입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까?</p> <p>○ 감량화 의무사업장 대상은?</p> <p>○ 감량화 의무사업장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업소의 수거방법은?</p> <p>○ 전용수거용기 크기는?</p> <p>○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 지정은 처음에 몇 가구를 지정할 계획인가?</p> <p>○ 이 지정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p> <p>○ 3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마련하였습니까?</p>	<p>○ 화성군 남양면에 있는 남양농장 2곳과 김포에 있는 실로암농장입니다.</p> <p>○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500인 미만, 음식점은 내부면적 100m' 이상, 시장, 호텔 등이 해당됩니다.</p> <p>○ 현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거합니다.</p> <p>○ 보통 120ℓ 정도입니다.</p> <p>○ 약 4만 가구이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50%가 됩니다.</p> <p>○ 약 30톤 정도입니다.</p> <p>○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농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환경부 폐관 67500-1510(97. 11. 15)호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함.

□ 주요골자

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안 제4조)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함.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안 제5조)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 후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도록 함.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안 제6조)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③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④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⑤스스로 감량처리하도록 함.
-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②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고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용기에 배출하도록 함.

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안 제7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발생·감량 및 재활용 처리내용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안 제10조)

-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위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 등을 정하도록 함.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수거용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부산물은 재활용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시설,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안 제11조)

○ 규격봉투 사용시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격봉투 사용 : 봉투판매가격(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표6의 규정)

- 전용수거용기 사용 : 감량의무사업장 kg당 50~85원, 공동주택 세대당 월 1,000~2,000원

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안 제12조)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또는 압축하여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

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운영한다.

- ②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하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다.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라.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

-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

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의 발생·감량 및 재활용처리내용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여 이를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로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산정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 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 산정 부과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제6조제1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일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 차 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 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 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20	50	100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 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 하지 아니한 경우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 조제2항 관련)	30	50	100	

<별표 3>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한다.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 산정·부과할 수 있다.

○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감량의무 사업장의 경우 : Kg당 50 ~ 85원의 비용을 부담.

- 공동주택의 경우 : 세대당 월간 1,000 ~ 2,000원의 비용을 부담.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신 고 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부천시 동 번지 호 (전화 :)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음 식 점 : 객실·객실 합계면적 : m²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²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²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	------

자 가 감 량 처 리 계 획	감 량 처 리				부 산 물 처 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 리 량	부 산 물 발 생 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월	Kg/월		

자 가 재 활용 계 획	재 활용 량	재 활용 방법	재 활용 장소
	Kg/월		

위 탁 재 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자 가 감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부천시 동 번지 호 (빌딩 층 호)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 / 년
----------------	--------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 산 물 처 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리방법	처 리 자

재 환 용	자가 재활용의 경우		위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 체 명	업 종	주소·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